

광주지방법원 2023. 1. 17 선고 2022가단5242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범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대한

2. C

3. D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12. 20.

판 결 선 고 2023. 1. 17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 B와 유한회사 E(이하 ‘E’라 한다)와 사이에 전남 보성군 F 임야 5174㎡(이하 ‘이 사건

부동산'이라 한다) 중 6/10 지분에 관하여 2022. 3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6/10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22. 3. 15. 접수 제3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C,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씩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2. 5. 25. 접수 제6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갑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E와 피고 B은 2020. 8. 7.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/10 지분, 4/10 지분을 취득한 사실, 피고 B은 2022. 3. 11. E와 이 사건 부동산 중 6/10 지분에 관하여 거래가액 11,000,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. 3. 15.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 C, D은 2022. 5. 6.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 34,000,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. 5. 25. 각 1/2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원고는 그 공동대표이사로서 E의 이사였던 G에 대하여 원고 회사 법인자금 횡령 유용한 금액 1,111,606,586원, 원고 토지 및 건물 불법매각 및 매각대금 횡령 금액 233,900,000원, 고객이 현금납부 한 전화요금 임의 사용 금액 169,534,786원, 아이폰12 판매대금 임의 사용 금액 및 허위급여 지급금액 45,262,800원, 법인자금 무단 인출 이후 일부 금액 상환한 차액 23,994,506원, 기타 법인자금 부당 횡령 금액 17,430,370원, 아이폰 13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금액 10,441,220원, 법인카드 도용 사용 금액 9,324,584원의 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,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의하여 G이 이사로 있던 E에 대하여도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, E와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중 6/10지분 매매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, 피고 B은 수익자로서, 피고 C, D은 전득자로서 그 취득지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그 주장 소정과 같이 G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,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에 의하여 E에 대하여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갑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기업은행, H조합, I조합 무등지점, J은행, 기업은행에 대한 각

금융거래정보 제출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